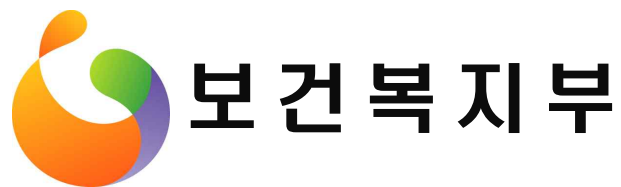


2014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안내 매뉴얼





Contents

I. 사업 개요	1
II. 후견지원단 매뉴얼	4
III. 후견지원단 활용서식	17
IV.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개요	37
V. 공공후견인	41
VI.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45

I.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사업
개 요

□ 배경

- 발달장애인 인권 문제 지속 발생
 - 거지 목사 사건('13.8), 염전 노예 사건('14.2),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사건('14.3) 등 발달장애인 대상 인권 침해 지속 발생
-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구축
 - 기양성된 공공후견인 후보자(총 900명)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 추진
 - * 현재 35명의 공공후견인 활동 및 2014년 60여건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중 (2014.5.)

□ 개요

- 명칭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 인원 : 300명
- 활동 기간 및 지역 : '14.5~12(8개월), 전국 시군구
 - * '14년도에 한하여 사업 진행. '15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
- 주요 역할
 - 지역사회내 취약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 지역사회내 발달장애 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 장애인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인권 상황 모니터링

○ 활동 방식

- 단원별로 활동 지역 설정(시군구) 후 매월 2회 이상 현장 방문 및 매월 1회 정기보고서 제출(→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

□ 선발 방법

○ 선발 기준

- (객관적 기준) 공공후견인 교육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관련 분야(장애인복지·인권) 경력자, 결격사유 미해당자

* 후견인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피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 (주관적 기준)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후견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 선발 방식

-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추진 일정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선발 및 유관기관 홍보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모집(~4.25, 교육기관)
- 지자체·장애인 거주시설 협조 공문 발송(~4.18)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최종 선발(4.28, 복지부)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발대식(5.2) 및 활동 시작(5.1)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단’ 시설 연계(6월중)

- 시설협회-후견인교육기관간 MOU 체결 추진

○ 지원단 성과 평가 및 사업 지속 여부 검토(12월중)

◆ 예산집행

활동지역별 및 후견지원단 명단 → 매월 2회 이상 현장 방문 → 매월 1회 정
기보고서 작성 → 후견인 후보자 교육기관(중앙회 및 지회)정기보고서 제출 → 시·
군·구 보고 → '14년 예산중 공공후견활동비 지원(10만원/월)지급

II. 후견지원단 매뉴얼

후견인 활동 서약서

본인은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후견인 또는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시점부터는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의 지위가 자동 상실됨을 인식하고 있으며, 후견지원단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후견지원단 단원으로 해촉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후견지원단의 다음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조언
 -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심판절차 안내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
2.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 활동할 때 매월 2회 이상 활동 지역으로 설정된 시·군·구의 발달장애인들을 현장 방문하고 매월 1회 정기보고서를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3.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 활동할 때 시·군·구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4.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기관의 지시나 지원에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5.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민사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의 모든 책임도 질 것을 약속합니다.
6.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양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4. 5.

후견지원단 단원 000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의 활동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I. 지역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확보

1. 활동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후견지원단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 통보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교육지원기관에서 명단을 첨부하여 협조 요청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기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권센터, 무한돌봄센터, 장애인인권센터, 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기관 등)와 네트워크를 형성함 .
3.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

II. 발달장애인 방문하기

1. 지역 내 발달장애인 또는 그 가족을 방문: 최초 방문 시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기타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의 담당자와 같이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후견지원단 단원으로 발달장애인을 방문할 때에는 후견지원단 단원복을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함.
3. 지역 내 여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방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야 함: 우선 순위 결정에서는 재가 발달장애인으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 돌봄이 약한 발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발달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방문하도록 함.

4.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방문할 때에는 최대한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춤: 후견지원단은 시범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발달장애인 개인에 대해서 법적 권한이 없음을 명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함.

III. 상담시 유의할 점

1. 상담 시 어려움이 있을 때 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기관, 후견지원단 중앙지원단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도록 함.
2. 상담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이 고충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기록하도록 함. 기억에 의존하여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IV.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

1.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의 요청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지역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방문하는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서 요청할 때 지역 내의 발달장애인을 방문하는 업무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V. 보고

1. 활동서식에 있는 서식을 참조하되, <서식 1>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함. 가급적 방문을 마친 직후 바로 보고하도록 함.
2.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 또는 중앙지원단과 협의하여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 이 때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단체 등의 실무자와 의견교환.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문의

VI. 업무의 종료

1. 후견인 또는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시점부터는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의 업무는 종료됨.
2. 2014.12.31.자로 후견지원단 활동이 종료됨.

3. 후견지원단 단원으로서의 활동이 종료될 때에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발달장애인 개인 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후견인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 반납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제도 설명하기

-간단서술버전-

성년후견제도: 자립생활 도우미제도;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제도

취지

이 제도는 ***[피후견인]씨가 ***씨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씨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할 때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씨를 도와주실 분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후견인

이제부터 *년[한정후견기간] 동안 \$\$\$[후견인] 씨가 ***씨를 도와주실 것 입니다. (필요하다면; \$\$\$씨 아시죠? 지난 달까지 매주 한 번씩 와서 ***씨와 같이 은행일 도와주시던 분이요.) \$\$\$ 씨는 ***씨가 은행일 볼 때, 병원에 가야 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야 할 때 ***씨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씨는 ***씨가 불쾌해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씨는 \$\$\$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법원심판

***씨가 \$\$\$씨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방이 있는 큰 건물인데 ***씨는 그 중에 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판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판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씨를 도와줄 \$\$\$씨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옆에 있을 것이니까요. 판사님은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텐데 잘 듣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 선생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 끝날 때 까지 자리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판사님께서 이야기 하실 때는 조용히 잘 듣고 물어보실 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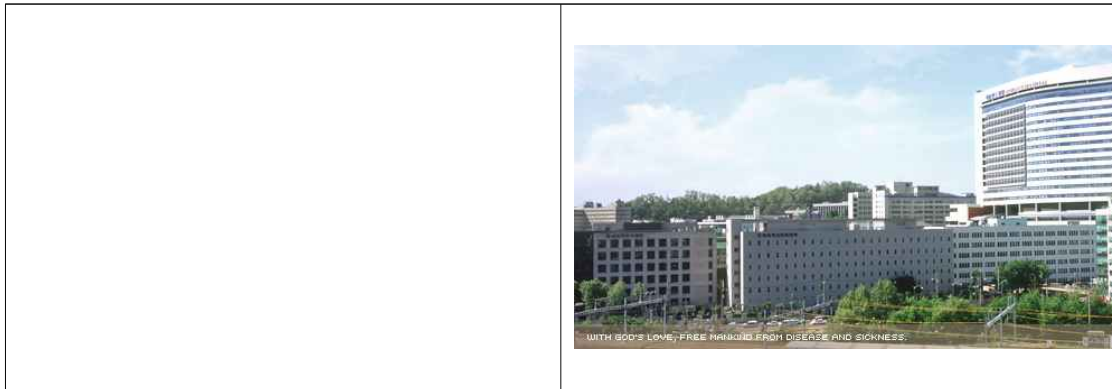
***씨는 여러 가지 일들[후견범위]을 해결하는데 \$\$\$씨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동의서를 포함한 서류]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또는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심볼버전-

성년후견제도: 자립생활 도우미제도;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제도

[취지] 이 제도는 ***[피후견인]씨가 ***씨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씨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할 때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씨를 도와주실 분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	--



[후견인] 이제부터 *년[한정후견기간] 동안 \$\$\$[후견인] 씨가 ***씨를 도와주실 것 입니다. (필요하다면; \$\$\$씨 아시죠? 지난 달까지 매주 한 번씩 와서 ***씨와 같이 은행일 도와주시던 분이요.)	\$\$\$ [후견인] 사진
\$\$\$ 씨는 ***씨가 은행일 볼 때,	
병원에 가야 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야 할 때 ***씨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씨는 ***씨가 불쾌해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가 하고 싶어 하	

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
다.

***씨는 \$\$\$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
까?



[네]



[아니오]

[가정법원심판]

***씨가 \$\$\$씨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법
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방이 있는 큰 건물인데 ***씨
는 그 중에 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판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판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주시
는 분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씨를 도와줄 \$\$\$씨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옆에 있을 것이니까요.
판사님은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텐

데 잘 듣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 선생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 끝날 때 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판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조용히 잘 듣고 물어보실 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씨는 여러 가지 일들[후견범위]을 해결하는데 \$\$\$씨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동의서를 포함한 서류]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의사결정능력 평가 시 유의점

- 의사결정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도움 및 지원의 정도가 정해지고, 필요한 후견서비스의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의사결정능력 평가를 위한 질문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할 때, 보다 쉽고 당사자가 익숙한 용어와 구체적 표현을 이용하여 질문을 합니다.
 - 예. 현재 신변처리는 할 수 있으십니까?
---> 현재 일어나서 혼자 이빨을 닦을 수 있으십니까? 화장실을 혼자 가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2. 질문은 가급적 주관식으로 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되, 필요에 따라 선다형 질문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예. (개방형) 이름은 무엇입니까?
(폐쇄형) 이름이 “홍길동(가명)”입니까?
 3. 유도심문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예. (개방형) 아침에 어디에 가십니까?
(폐쇄형) 아침에 버스타고 가시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유도심문적 질문) 아침에 버스타고 저기 길 건너 하얀 건물 2층에 가시죠?

4. 질문자와 후견수요자 간의 유대가 형성된 후, 의사능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후견수요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 의사결정능력 평가원칙 6가지를 명심하십시오.

1. 성인이면 누구나 스스로 의사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결정에 관한 일”에 관한 부분일 뿐이다.
3. 외관을 가지고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지 말라.
4.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해야지 “결정”자체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6. 대신 해서 결정하는 방법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1. 일상의 신상보호 영역과 의사결정능력

- 일상생활

(개방형)

- ✓ 집안일 중 ***씨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폐쇄형)

- ✓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나요?
- ✓ 화장실을 혼자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혼자 샤워(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나요?
- ✓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지어/차려 먹을 수 있나요?
- ✓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있나요?

- 복약/의료관련

(개방형)

- ✓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 ✓ 왜 약을 드시는 지 아시나요? 어디가 아파서 드시나요?
- ✓ 약은 언제 드셔야 되는 지 아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드시나요? 같은 약을 드시나요?
- ✓ 언제 의사에게 가야하나요? 어디가 아플 때 가야하나요? 어느 병원에 가시나요? 어떻게 가시나요?

- 활동보조인 관련

(개방형)

- ✓ 활동보조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시나요?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 ✓ 활동보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나요? 어디에서 받고 계신가요? 만족하십니까?
- ✓ 가족 이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누구신가요? 어떤 일들을 같이 하시나요?

-기타 일상

- ✓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씨를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야단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언제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누가 그랬나요?



2. 의료 영역과 의사결정능력

(개방형)

- ✓ 건강상태(또는 치아상태)가 어떤지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까?
- ✓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 어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 ✓ 어느 의사선생님께 받고 계십니까?
- ✓ 치료의 좋은점과 안 좋은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쇄형)

- ✓ 현재 받고 있는 치료(또는 치과치료)가 있으십니까?
- ✓ 치료를 받으시면 어디가 안 아파지십니까?
- ✓ 치료를 계속 하시길 원하십니까?
- ✓ 치료를 받기 싫으시다면 많이 아파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 ✓ 의사나 간호사들은 ***씨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까?
- ✓ 의사나 간호사들이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 ✓ 치료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위험한 점)을 들으셨습니까?
- ✓ 혹시 다른 의사/병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3. 재산관리와 의사결정능력

-은행관련

(개방형)

- ✓ 생활에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돈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시나요?
- ✓ 어느 은행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 ✓ 지금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 ✓ 어떻게 먹고 사시나요? 돈은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 ✓ 매달 당신이 내야 할 관리비, 전기료, 핸드폰비, 가스비는 얼마인가요?
- ✓ 만일 관리비, 전기료 등을 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알고 계신가요?
-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디에 쓰시나요? 쓰신 돈은 언제, 어떻게 갚으시나요?
- ✓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누가 돈을 버시나요? 누가 돈을 관리하시나요?

(폐쇄형)

- ✓ 현재 매월 받는 연금의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 ✓ 한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재료들, 예를 들면 쌀, 채소, 고기, 우유 등을 살 줄 아시나요?
- ✓ 관리비, 핸드폰, 가스비, 전기료 등등을 납부하고 계신가요?
- ✓ 이번 달에 필요한 돈과 써야할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신가요?
- ✓ 은행에 말고 다른 곳에 돈이나 집이 있으신가요?
- ✓ 실수로 필요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돈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 ✓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받으셨나요?
- ✓ 혹시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4. 계약체결과 의사결정능력

(개방형)

- ✓ 무엇에 관한 계약 내용인가요?
- ✓ 누구랑 계약하는 건가요?
- ✓ 이 계약서에 ***씨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 ***씨 이름이 들어 있는 이 계약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폐쇄형)

- ✓ 이 종이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다 해야합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 계약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 ✓ 계약 내용을 듣고 나서 그대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 내가 하고 싶어서 이 계약서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III. 후견지원단 활용서식

[서식 1] 활동 기록지

발달장애인 가정방문 활동 기록지

소속 교육지원기관				지역			
일시	2014. . .		상담시각	:	상담자		
대상자	성명		성별	☐ 남 ☐ 여	연령	만()세	
	장애유형	☐ 발달장애 ☐ 정신장애 ☐ 치매 ☐ 기타()			장애 급수		가족 유무
	주소				연락처 (휴대폰)		- -
대상자와 의 관계	☐ 본인 ☐ 가족() ☐ 이웃 ☐ 기타						
발달 장애인 가정 상담 주요 내용							
상담 결과 보고	1.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2.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장애인부모교육,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등)						

	3. 필요한 사회복지급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나요? ☐ 예 () ☐ 아니요 4. 후견이 필요한가요? ☐ 예() ☐ 아니요 5. 후견이 왜 필요한가요?
조치 (보고 사항)	
기타 활동 사항	* 발달장애인 및 가족 후견수요 발굴 및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해 부수적으로 활동한 내역 기재(예 : 지자체 방문,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등)
비고	

[서식 2]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장애인 관련 혜택

- ☐ 예 ☐ 아니오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았나요?
- ☐ 예 ☐ 아니오 장애인등급 상향판정 또는 하향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 ☐ 예 ☐ 아니오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가정 양육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의료보호급여 등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보장 건강보험급여 등의 수혜를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공공시설이나 공공교통수단(철도, 도시철도, 항공 요금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등)을 무상으로 이용(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장애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할인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요금, TV 시청료 등의 할인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등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공동주택 특별분양신청이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종교재단 또는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 ☐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아래 첨부 자료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혜택

- ☐ 예 ☐ 아니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 * 기초생활급여 중 수급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재할급여
- ☐ 예 ☐ 아니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핸드폰 인터넷 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상하수도요금의 김면 혜택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종량제봉투를 지급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종교재단 또는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나요?
- ☐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위 I.을 참조)

【서식 3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후견 신청이 필요하고, 또 본인도 동의할 경우 작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남·여)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귀중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여러 유형의 후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후견심판신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고, 후견심판 후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보유·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사업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후견제도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보유한 정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심판청구 지원사업 및 관련된 연구에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령, 주소 및 연락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장애의 정도, 의사소통능력의 정도 등 후견심판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시범사업 참여시~ 후견심판결정시까지

4. 개인정보의 활용 계획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후견심판청구 절차의 지원을 실제 수행할 연구자 및 관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그에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에게도 일부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후견심판사업 참여자

(서명 또는 인)

* 이용자는 상기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본 후견심판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자	성명			
	소속 후견지원단			
	지역			
사건본 인	성명		나이/성별	
	주소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이 서식 작성에 대해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

☐ 동의를 받았음
 ☐ 동의를 받지 않았음: 이 경우 특별한 이유 (예시: 동의능력이 없음)

※ 후견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본인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면 됨).

1.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 . .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 아니오 ☐ 예 (예일 경우, 언제 : 후견인 성명:) 후견인 연락처:		

2. 사건본인의 일반적인 특성

가족 상 황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기타 ()	
	가족관계		
장애유무		☐ 장애유형:	☐ 장애등급: 급
경제 생 활	소득수준	☐ 국민기초수급 ☐ 차상위 120% ☐ 일반	
	취업여부	☐ 예 (직장명:) ☐ 기타(자영업:) ☐ 아니오	
거 주 상 황	독거여부	☐ 독거 ☐ 준독거 ☐ 동거 가구원 있음 ※ 본인 포함 총 가구원 수(명)	
	거주현황	☐ 자택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기타()	

4. 사건 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세부정보

가족 및 보호자 정보 (Family History)

▪ 가족관계 및 보호자(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작성하면 됨)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동거여부

사건 본인의 사실상의 보호자(가족 등)의 재산 정도(부동산, 동산, 부채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사건 본인을 돌볼 역량 (고령, 장애 등 참조)	
--	--

사건 본인이 부양할 가족의 상태 (자녀의 연령, 가족 중 장애가 있을 경우, 동거여부, 가족관계에 대한 주변의 평가 등)	
--	--

보호자가 있을 때 인적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기타사항	
개인력 및 가족력 정보제공자				

5. 사건 본인의 주거 관련 정보

주거생활 영역

주거 생활	☐ 자택 ☐ 단기보호시설 ☐ 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 ☐ 기타
	* 시설명 : * 생활일 : . . * 생활기간 : 약 개월
주거 형태	☐ 아파트 ☐ 빌라 ☐ 단독주택 ☐ 복합건물 ☐ 기타
	* 평수 : * 방갯수 : * 화장실 유무 : 유 * 단독방사용:
주거 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 시가 : * 전세금: * 보증금,월세:
기타사항(주거 환경을 직접 본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청결상태 등 포함)	
약도	
교통편(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적으면 됨)	

II

사건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성별	남 ☐ 여 ☐	주소	

<작성자>(사건본인이 사회생활을 수행할 때의 일반적 활동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알기 위한 것임.
가까운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급적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을 직접 면담해서 쉬운 말로 충분히
대화해 본 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알지 못하는 사항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음)

성명(서명) :

주민번호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 관계) :

주소 :

(☎

)

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내 용						
일상생활 활동작	1. 보행 : 2. 식사 : 3. 착탈의 : 4. 용변 : 5. 의사소통 :						
현재 건강상 태	1. 질환 : 2. 약복용 : 3. 외상 : 4. 중독 : 5. 시각문제 : 6. 청각문제 : 7. 기타(그 외 건강 및 신체상태) :						
교 육	<table border="1"> <tr> <th>기간</th><th>학교명</th><th>졸업여부</th></tr> <tr> <td></td><td></td><td></td></tr> </table>	기간	학교명	졸업여부			
기간	학교명	졸업여부					
직업훈련 및 직업활동	<table border="1"> <tr> <th>기간</th><th>기관명</th><th>내 용</th></tr> <tr> <td></td><td></td><td></td></tr> </table>	기간	기관명	내 용			
기간	기관명	내 용					
대인관계 및 정서적 특성							
강 점							
장애수 용도							
기타							

	불편정도 기능종류	불편없음	조금불편	많이불편	불가능	지원제공상태			
						충분	보통	불충분	지원 없음
일 상 활 동 구 분	이닦기								
	목욕하기								
	옷입기/벗기								
	용모손질								
	용변보기								
	장보기								
	식사준비								
	식사하기								
	청소/설거지								
	세탁								
	누워서 앉기								
	앉아서 서기								
	화장실 가기								
	보행								
	휠체어 이동								
	교통수단 이동								

2.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등급		중복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장애진단기관	
약복용 여부(약물명)			
보장구 사용 또는 필요 여부			
장애관련 치료 현황			

3. 행동특성

번호	내용	평가			기타사항
1	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2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갔다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3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4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5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땔 수가 없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6	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7	의미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 자주	☐ 가끔	☐ 아니요	

4. 인지기능(해당수준에 체크)

읽기/쓰기	
수개념	
날짜개념	
위치개념	
지시이해력	
상황판단력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① 언어이해 능력

평가내용
☐ 말을 이해하는 데 2문장 이상의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예. 어제 엄마가 사 온 노란색 가방을 줄까?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파란 곰돌이 가방으로 줄까?)
☐ 말을 이해하는 데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할 때 잘 이해한다. (예. 가방 줘? 밥 먹을래? 물 줄까?)
☐ 말을 이해하는 데 단어 수준으로 제시할 때 이해를 잘 한다. (예. 가방? 밥? 물?)
* 기타사항 :

②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 말을 표현 할 때 두 단어 이상 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가 주스 줘)
☐ 말을 표현 할 때 명확한 단어 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 주스)
☐ 말을 표현 할 때 불명료한 단어 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어아(엄마), 두드(주스))
☐ 말을 표현 할 때 불분명한 소리 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으으으, 아아아)
* 기타사항 :

③ 의사소통이해능력

평가내용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대부분의 말 을 이해할 수 있다.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간단한 말 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여기 앉아)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제스처 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손짓, 얼굴표정)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억양이나 톤 을 이해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④ 의사소통표현능력

* 기록방법: 내용 ☒ → 수준 ☒, 혹은 기타사항 또는 예를 기입한다. (예. 기능1-요구하기에서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를 체크했다면 → 수준: ☒소리를 내서 표현가능에 다시 체크한다. 수준에서 체크문항이 없거나 기타사항이 있을 시 기타사항: 무시한다라는 식의 예를 써준다.)
--

***기능1- 요구하기**

내용	☐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수준	☐ 단어, 문장 ,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물” 또는 “물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컵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이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표현, 또는 마시는 행동을 표현)
	☐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의사소통 시 말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구)	☐ 의사소통 시 말로 행동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구)
수준	☐ 단어, 문장 ,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주세요” 또는 “휠체어 밀어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 또는 “휠체어 밀어주세요”)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갯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밀어달라고 표현)
	☐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으로 밀어달라는 것을 표현)
기타 사항		

***기능2- 반응하기**

내용	☐ 의사소통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순응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순응하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수준	☐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 도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네”를 상징하는 스마일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네, 좋아요)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 저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 저항하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
수준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아니요”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아니요”를 상징하는 화난 얼굴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요”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부정의 의사를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 싫어)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
기타 사항		

기능3- 주관적 진술하기

내용	☐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
수준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나 문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을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나 문장을 말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로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 할 수 있다 .	☐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 하기 어렵다 .
수준	☐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 도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내용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
수준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 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이거”, “네모” 등 단어로 표현)	☐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
기타 사항		

Ⅲ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

(복지지원등을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사항 기술)

현금지원		☐ 장애인연금	☐ 자녀학비지원
		☐ 장애수당	☐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복지 서비스지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월 천원)
		☐ 기초노령연금	☐ 기타현금지원((월 천원))
		☐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수당(본인의 자녀)	
		☐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사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 보육료지원(자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자녀)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기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기타지원	보장구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주거지원	☐ 보장구지원	
		☐ 주택지원	☐ 주거환경개선
	교양교육	☐ 주거자금지원	☐ 주거안전택수리
		☐ 교양취미	☐ 자격증취득
	여가문화지원	☐ 노인대학	☐ 학습지도
☐ 정보화교육		☐ 언어습득	
기타지원	☐ 문화체험	☐ 생활체육	
	☐ 여행,나들이		

2.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사무의 후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부라도 없다고 판단되면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 각 질문은 예시임. 이를 표시된 부분을 참조해서 기술하면 됨. 좌측 예를 참조해서 우측도 기술하면 됨)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건강에 관한 사항	☒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병원치료 및 입원에서 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 입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 서의 동의 등)	☐ 병원 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건본인에게 병원진료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병원진료를 연계하여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거소에 관한 사항	☒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주거와 관련한 계약체결, 변경, 해지의 대리권이 필요한지? 현 거주지의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무계약 세입자인 상태이므로, 계약 갱신 대리가 필요함
	☐ 스스로 집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소 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주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포함)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계약체결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가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교육, 여가, 노동에 관한 사항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 이용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요한지?	
	☐ 직업활동의 수행(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	■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 피후견인의 통장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 필요함
	■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 사회복지 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개인의 수입원이 전무한 상태로 수급 신청이 필요함 - 수급비를 거부하며 통장을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개설 및 수급비 관리가 필요함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상 생활비 관리를 위한 대리권이 필요한지?(통장개설, 이체, 해지 등 포함)
	☐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서의 대리가 필요한지?
	☐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사건본인이 외출을 극도로 기피하고 대인접촉을 피하므로, 본인을 대신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수급비등을 관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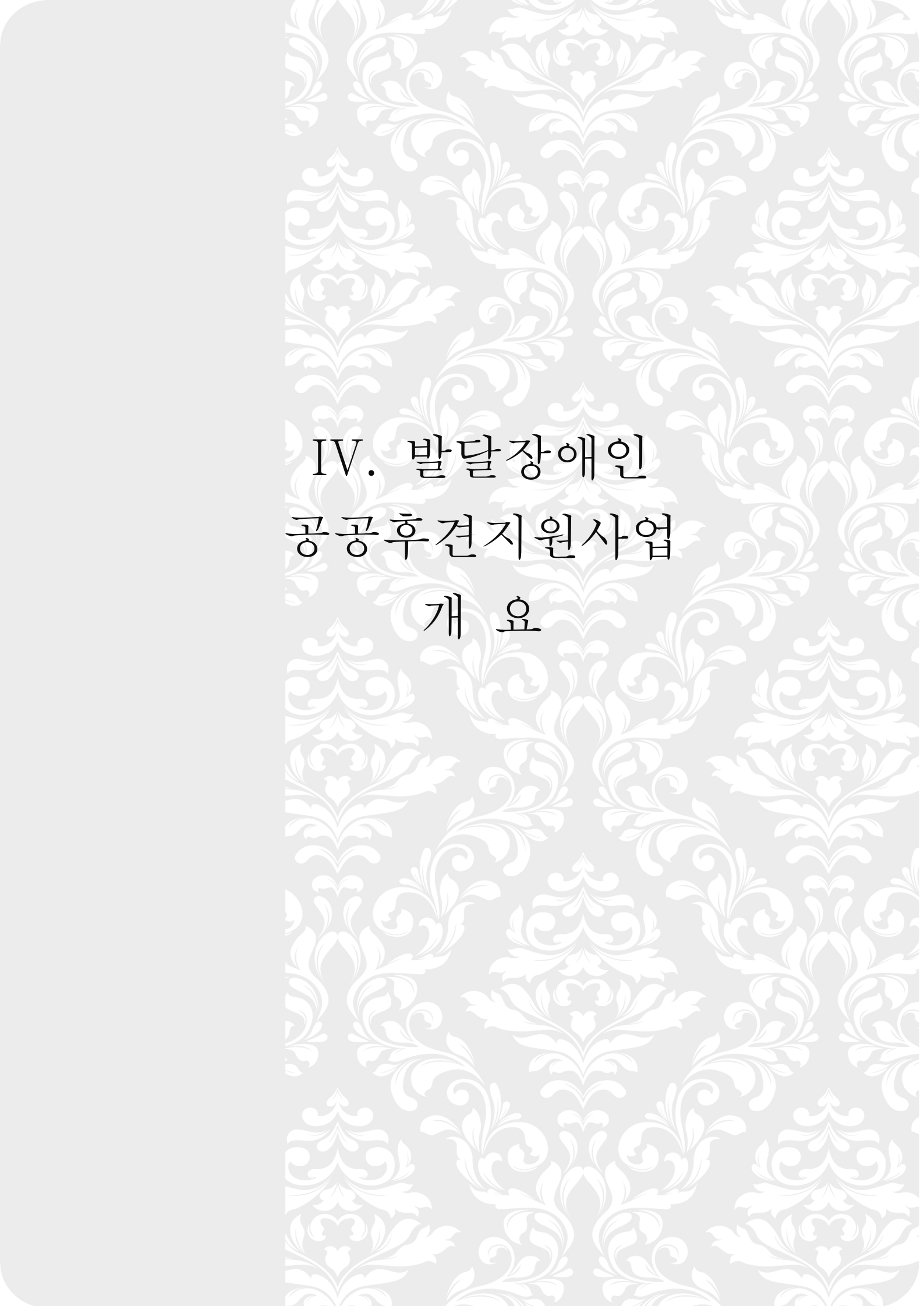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타	※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 위 항목을 기재할 때에는 특히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람. 한편 당해 사항(위 건강, 주거 등등)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지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이 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사건본인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치료의 내용이 복잡해서 의사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후견수요자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나요?
- ▶ 사건본인이 주거를 옮겨야 하나요? 임차료를 올려 주어야 하나요? 지금 임차료가 비싼 것 같은가요? 아니면 주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 사건본인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방임·유기의 가능성이 있나요?
- ▶ 사건본인이 경제적으로(불리한 계약체결 등), 정서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나요?
- ▶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식사, 청소, 빨래 등등)을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렵나요? 활동보조인을 이요알고 있나요? 현재 후견수요자의 일상생활상의 돌봄에 불충분한 점이 있나요?
- ▶ 사건본인을 돌보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도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어서 보호에 불충분한 점이 있나요?
- ▶ 사건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나요?
- ▶ 사건본인이 사회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 사건본인이 사회복지 급여의 관리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나요?
- ▶ 사건본인이 스스로 금전관리를 할 수 없나요? 은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후견지원단 활동 관련 연락처

-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02)461-8044
- (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02)445-5444
- (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 (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02)2675-5364
-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02) 2220-4241, 4249 Fax) 02) 2220-4259



IV.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특성의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
 -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프랑스('68), 영국('85), 독일('92), 일본('99) 등 선진국들은 성년후견제를 도입
 -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역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개정 요구('06)
- 추진 경과
 -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2) 및 시행('13.7)
- 성년후견제도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종류) 성년후견(지속적 완전후견), 한정후견(지속적 부분후견),
특정후견(일정기간 동안의 특정 목적 후견), 임의후견(본인이 후견인 결정)
 -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 동의 등
 - (금치산·한정치산제와의 차이점) 재산관리 외에 의료·복지 등 신상 영역에서 피후견인 보호 가능, 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2 사업 개요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800건 ○ 공공후견인 활동 : 8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 제3자 후견 유형이 한정후견인 경우 제외)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0만원	
공공후견인 대상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인 교육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 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원칙적으로 특정후견(가족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속적 후견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 가능)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분기별,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령) ○ 필요시 교육기관을 통해 점검. 직접 점검도 가능	

●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	● 광역단위 사업 조정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교육기관 선정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인원) 배정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 발굴 · 후견심판 청구 · 심판절차 및 후견인 활동 비용 지급 · 교육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지도·점검 실시)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지정 기관	●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관리·감독 · 사업실적보고 및 심판절차비용·후견인활동비 지급

V. 공공후견인

1 후견인의 자격기준

● 후견인의 법적 요건

- 민법에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만 규정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후견인 선임시 고려 사항

-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에서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사리판단 능력, 시간적 여유, 거주 지역,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직업 및 경험, 사업참여 의지 등

•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함

● 후견등기부등본 수령

- 심판결정 이후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후견인은 후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관. 후견등기부는 자신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됨. 특히 관공서, 은행 등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에는 후견등기부등본을 제시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해야 함.

● 피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복지급여 및 서비스현황조사

- 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목적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피후견인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피후견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후견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변동을 발견하면, 피후견인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후견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에게 재산상황의 조사를 지시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는 피후견인의 활동반경에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함. 가령 A 마트 안주인, B 은행 직원, C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이웃 D, 경찰 등등. 이들로 하여금 피후견인에게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후견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당부하고, 연락망을 상호 갖고 있도록 함. 가령 체크 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오늘 가게에 왔을 때 체크카드가 없다, 살고 있는 집에 있던 자전거가 없어졌다, 살고 있는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불결하다 등등이 위험신호일 수 있음.
- 피후견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긴급연락망을 구축하

고,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함.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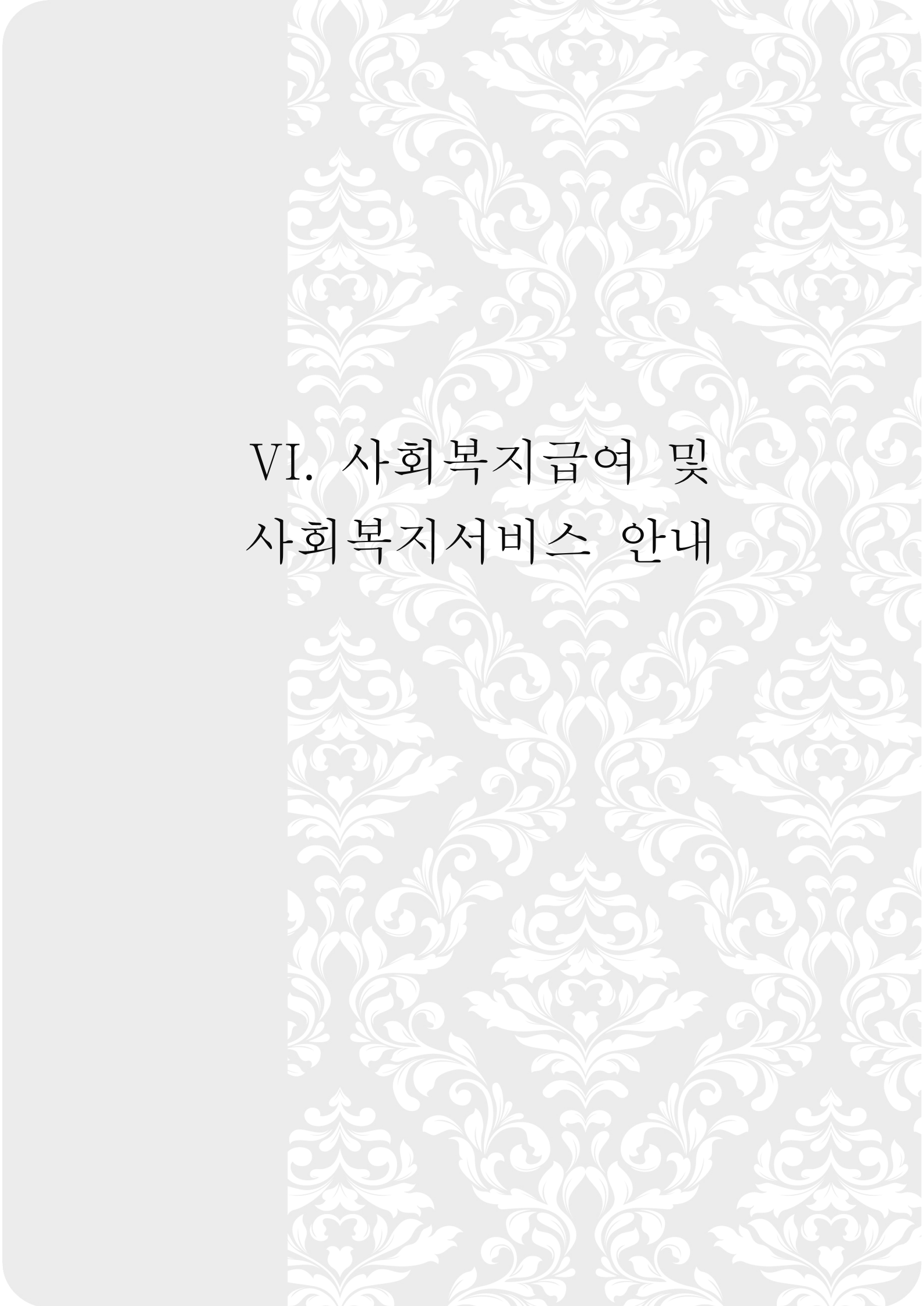
- 기타 피후견인의 활동반경에 있는 기관 등의 성명(명칭), 주소 및 연락처 확보

- 정기보고서 제출

- 후견인은 후견감독인(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양성기관),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후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함.

- 후견인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 전부에 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후견인의 임무로 부여되지 않은 부분은 답할 필요가 없음.

- 정기보고서는 매월말 작성하여 후견감독인 및 가정법원에 제출



VI.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장애등급별 복지급여·서비스 수급현황 정리

구분	제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 특 지 원	1. 장애인연금(현)	2~15만원(3급은 중복장애)			-	-	-
	2. 경증장애수당(현)	-	-	3만원(시설입소자 2만원)			
	3. 장애아동수당(현)	10~20만원(시설입소자 2~7만원)					
활 동 지 원	4. 활동지원(바)	(기본급여) 374~919천원 (추가급여) 86~2,163천원	-	-	-	-	-
생 활 비 경 감	5. 전기요금할인(감)	20%감면 (≒8,880원)			-	-	-
	6. 도시가스할인(감)	가구당 최대 6,600원			-	-	-
	7. 이동통신요금할인(감)	가입비/ 기본료및통화료 (≒1.4만원) (전액) (35%할인)					
	8.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감)	30% 할인(≒1.1만원)					
	9. 유선전화요금할인(감)	사내통화료 사외통화료 이동전화요금 114안내요금 (50%할인) (30%할인) (10%할인) (면제)					
	10. TV 수신료(면)	2,500원(TV수신료 전액)					
	11. 건강보험료 경감(감)	30%감면	20%감면		10%감면		
교 통 비 경 감	12. 고속도로통행료 할인(감)	50%할인(≒1.9만원)					
	13.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감)	50%할인(≒13,400원)			20%할인(≒5,400원)		
	14. 항공요금할인(감)	50%할인(≒9.2만원)					
	1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감)	50%할인(≒36,900원)			30%할인(≒22,140원)		
	16. 공영주차장요금(감)	50%할인(≒월 1만원)					
	17. 승용자동차 LPG사용허용(서)	LPG연료차량구입 또는 휘발유차량구입 구조변경					
	18.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할인(감)	50%할인(≒8천원~3만원)			30%할인(≒5천원~18천원)		
보 육/ 양 육	19. 장애아무상 보육료지원(바)	종일(394천원)/ 방과후(197천원)					
	20. 장애아동가정 양육지원(서)	돌봄서비스(320시간 범위내)			-	-	-
	21.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현)	고등생 : 입학금 수업료/교과서(119천원) / 학용품비(49천원) 초·중생 : 무교재비(36천원) / 학용품			-	-	-

		비(49천원)			
의 료/ 보조기 지 원	22. 장애인의료비 지원(감)	1차 의 료 기 관 / 2·3차 의 료 기 관 및 국 공 립 결 핵 병 원 본인부담분 1,000~1,500원중 750원 지원 금 여 비 용 중 본 인 부 담 진 료 비			
	23.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감)	진단서발급비용: 일반장애/ 지적·자폐장애 1.5만원 4만원			
	24 장애검사비 지원(감)	기초수급자/ 차상위/ 직권재진단 5만원초과금액 10만원초과금액 소요비용무관			
	25. 각장애아동인광달팽이관 수술비지원(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26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물)	육창방지용품/자세보조용품/보행보조용품 등(2~120만원 상당)			
	27.보장구건강보험급여 실시(감)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액의 80%지원, 전액 또는 85%지원			
재 활 · 자 립	28.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바)	16만원 ~ 22만원			
	2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	자립지원			
	30.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서)	기능증진			
	3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서)	직업훈련	-	-	-
근 로/ 창 업	32. 장애인 일자리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26만원~100만원)			
	3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서)	수당&직업훈련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	보호고용			
	35.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사 업 수 행 기 관 운 영 (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취업관련 종합서비스)			
	36.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지자체,공공기관(3%이상)/ 50인이상 사업장(2.3 - 2.7% 이상)			
	37. 장애인 근로자 용자사업(대)	3%저리 용자			
	38. 장애인 창업자금 용자사업 (대)	3% 저리용자(5천만원 한도)			
	39.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대)	3%저리 용자(1,200~5,000만원 한도)			
	40. 장 애 인 자 동 차 구 입 자 금 용 자 (대)	3%저리 용자(1,000만원 한도)			
주 거 안 정	41.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현)	27만원한도(매월)			

	42.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분양알선(청약저축 무관)				
	43.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서)	380만원(한도)				
	4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서)	생활시설 입소 보호(의식주제공/재활서비스 제공)				
조 세 감 면	45. 장애인차량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감)	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면제)	4급 시각	-	-	-
	46.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면)	개별소비세및 교육세 전액 면제		-	-	-
	47.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감)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 면제				
	48.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면)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49. 소득세 공제	소득 추가공제(200만원)/부양가족 공제시 연령제한 미적용				
	50. 장애인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총소득의 3% 초과분)				
	51.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재산 추가공제(500만원×기대여명 년수)				
	52. 증여세 면제(면)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53. 장애인특수 교육비소득공제(감)	특수교육비 전액				
	54. 장애인수입물품 관세감면(감)	장애인용 물품(101종) 및 재활병원 진료 용구 등				
	55.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감면(감)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기술평가청구료(면제) 심사청구료(70%할인)				
문 화 · 인 권 서 비 스	56. 국공립공연관료할인(감)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국공립공연장및체육시설(50%할인)				
	57. 공공시설 이용요금면제(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58.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청각)/화면해설방송수신기(시각)/난청노인용수신기				
	59. 장애인방송시청지원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60.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무료형사변호				
	6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10부제 적용제외/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62.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출산장애인(1~3급)에게 출산비 정액지원/기초학습·인문·사회체험·보건·가족교육 제공				
	63. 재활 병·의원 운영	장애보장구 제작 /장애심리검사 평가				

기 타 장애인 사 업	64. 장애인복지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유니트 설치 지원
	65.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 감면(의수족, 휠체어 등)
	66. 장애인생상품 판매시설 운영	취업확대 및 소득보장
	67.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민원업무대행/지장출퇴근/ 장보기/이삿짐운반/가사돕기/취업안내 등 (실비)
	68. 수화통역센터 운영	출장 수화통역/일반인수화 교육/청각·언어장애인 고충상담
	69.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상담/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적응지도/계몽사업 등
	70. 주간 보호 시설운영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장애인보호자 출장여행등 경우 일시적으로 보 호
	71.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체력증진/신체기능회복지원
	72.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정보격차해소지원/인권·교육지원/생활·문화지원 등
	73.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재가장애인 방문·상담/의료·교육·지경재활서비스 제공
	74.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상담지원·사회활동수행지원/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
	75.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리프트 장착된 특장차운영/셔틀 콜운행 병행
	76. 편의시설 설치시민추진단 운영	편의시설 설치/편의시설 실태조사/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77.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보행시설자료수집/편의시설 개선 등

7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편의시설설치/기술적 지원

79.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저소득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832,562

-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8인가구: 2,202,994원)
-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급여대상	4~6급 경증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13 기준) 배우자 有 월928,000이하 배우자 無 월 580,000이하
급여액	기초생활/차상위 : 3만원 차상위 초과 : 2만원	최고 96,800원+a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월 8만원) 차상위계층(월 7만원), 차상위초과(월 2만원)

□ 의료보호 제1종, 제2종 기준

	1종	2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 -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자 -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중 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제외자
급여	전액 무료	외래진료 : 1회 1,000원 처방전 : 1매당 500원 입원 :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대 납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

	선정기준	급여수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결정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수준을 고려하여 중생보위에서 결정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지급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설정해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수준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결정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수준을 고려하여 중생보위에서 결정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인구학적 요인과 질환별 요인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